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12. 26.(수) 09:3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70차 및 제7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7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6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외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공개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그 이후에 비공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되, 국별 보고 순서는 이용자 정책국, 방송기반국 및 방송정책국 소관 안건의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마.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정책 제안서 보고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보고안건 마>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정책 제안서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로 구성·운영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17년 10월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 국내 기업 간 역차별 해소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위원회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시민·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 총 48인으로 구성하였고, 1소위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 그리고 2소위는 인터넷 상생 생태계 발전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3월에는 방통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고, 대국민 공개 의견도 수렴한 바 있고,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대상 별도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10월에 국정감사

시에는 해외사업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국내 역차별 현황을 점검하였고, 11월에는 상임 위원님 간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8일에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주최로 협의회 일부 논의 결과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배경입니다. 해외 사업자 법집행력 확보를 통한 역차별 해소 필요성입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는 달리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규에 대한 회피가 가능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통신사업 사후규제 체계의 개편 필요성입니다. 현행 통신 분야는 네트워크 중심의 규제체제로 다변화되고 있는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신사업의 사후규제 체계 개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 인터넷 기업보다 대용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게 부담하는 등 불공정 경쟁환경이 심화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 뿐만 아니라 대형 CP에 비해서도 높은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논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규제 집행력 확보 개선 방안입니다. 역외적용 규정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였습니다. 협의회 논의 과정 중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대리인제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법률상 규정들을 대리하여 적용받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협의회 논의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방법이 개정되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도입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와 자기책임 원칙 위배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임시 중지 명령제도 도입 방안입니다. ‘텀블러’ 사례 등과 같이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다면 이용자의 피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불법적인 정보·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거나 휴·폐업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시 일시중지 명령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또 김경진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조치가 미흡할 때 방통위가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접속 경로를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주체의 불일치 해소 방안입니다. 현재 해외 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는 구글, 애플 본사가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와 신고주체가 달라서 법 집행 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본사가 직접 신고하도록 해서 관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 신고제 폐지 등 진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규제완화 필요성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공조 방안입니다. 글로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해외

이용자 보호 관련된 규제기관이나 분쟁 해결기관 등 실무급의 협력체계를 우선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인터넷 시장현황 파악과 관련해서는 부가통신시장의 경쟁상황평가는 시장획정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통계보고 의무 부과를 우선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통계 보고 의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의무 대상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협의회 논의 과정 중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의무 부과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2021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지행위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맞춰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불공정 행위 등 사후규제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앱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이용자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규제를 명확히 하고, O2O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非 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규제대상에 OS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안입니다. 망중립성 관련해서 미국, 유럽 등 각국의 대응, 그리고 5G 기술 특성, 국내시장 역량 등을 고려해서 심도 깊은 토의 후에 3가지 견해를 제시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현행체계 유지방안입니다. 5G 기술 특성도 현행 망중립성 일반 원칙과 규제의 틀에서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5G 도입 이후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서비스 등은 관리형 서비스를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트래픽 관리 기준 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현재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규제완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망중립성 원칙 중 투명성 원칙만 유지하고 불공정행위 발생 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CP 등에게 망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전송지연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입니다. 실태파악과 관련해서는 망 이용료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시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CP의 불공정행위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공정한 망 이용료 협상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협상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까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서 평가 및 이행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에서 구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였고, 상호 간 입장 공유, 갈등 조율을 통해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역차별 이슈를 선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국내대리인제 도입, 역외규정 신설,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기여한 바 있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논의과정과 축적된 자료를 오늘 보고서로 발간하고 모두 공개함으로써 미합의 사항을 재논의할 시에도 허용토록 하여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행 방안입니다. 협의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내년도에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실행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망 이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OS, 클라우드, 앱마켓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 하고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실태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협력해서 망 대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도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들이 제안한 협의회 지속·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2기 협의회 구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정책 제안서 결과에 대해서는 방통위 그리고 KISDI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기 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신규 이슈를 발굴해서 정책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방송의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유료방송과 통신, 특히 통신에서는 사업자 간 상생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이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통신의 상생 문제를 거의 1년 동안 10개월 이상 다루어왔고,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참여시켜서 일종의 속의 제도 비슷한 것으로 운영해 와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어떤 것들은 결론이 있기도 하지만 침해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없이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는 계속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차 상생협의회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우리 정책발전 전에 많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들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인터넷 분야 최초로 사회적 논의기구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약 1년간의 열띤 논쟁을 통해 정책 제안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최종 결과물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본문이 80페이지 정도 되고, 부록이 약 700~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발표자료, 토론자료, 속기자료가 다 포함된 형식입니까?

○ 박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로 남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상반된 입장을 가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활동을 이끌어 온 김재영 국장님, 그리고 사무처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안된

논의결과를 보면 4개 분야 11개 과제입니다. 이 가운데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과 집행력 확보 부분의 세부 과제였던 해외사업자 역외 적용 규제, 그리고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은 논의 과정에서 이미 국회가 입법화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시 임시중지 명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입니다.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주체 불일치 해소 문제는 과기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우리 위원회의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마무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사업자와 국제 공조체계 구축도 우리 위원회의 국제협력담당관 직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관련업무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통신사업 사후규제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협의회 논의과정 중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인터넷 시장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의무 부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위주체가 과기정통부 장관인 만큼 우리 위원회도 시장 사후규제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사후규제 합리화 과제와 망 이용 관계에서 CP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과제도 위원회 소관으로 내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협의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망 중립성 관련 정책방안 마련은 현 정부의 공약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3가지 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의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정한 망 이용료 협상과 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협상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구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실행방안을 심층·검토하고 법 개정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난 10개월 이상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위 인터넷 생태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온 데 대해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까지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정책에 활용할 텐데, 지금까지 입법이 안 된 부분은 입법을 계속 지원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이것이 공개가 된 만큼 이 보고서를 보고서 특히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 해외 사업자들이 아마 상당한 입법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리를 준비해서 입법 저항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대리인제 도입 및 망법이 개정되어서 3월에 새해부터 시행되지만 국내 대리인 문제는 FTA 위반이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1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임기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박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2기를 어떻게든 구성해서 계속 우리가 이 작업을 연관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텐데 2기 구성은 언제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2기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1월 중에 의제를 수렴하여 조속히 출범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지금 당장 가이드라인 마련도 해야 하고, 또 인터넷 부가통신 시장경쟁상황평가에 반영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우리가 착수하지 않습니까? 자료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해외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기 보고서만 나왔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되고 빨리 2기 구성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서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10개월 동안 고생해 주신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초 이 협의회가 출범할 때 과연 이러한 방대한 이슈들을 다 다룰 수 있느냐, 그리고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전혀 다른데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 자평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운영해 오면서 전문가들, 사업자들, 또 정부가 상당히 깊게 논의해서 나름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로 인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들 즉, 역외규정 도입이나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 국내대리인제 도입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지 않나 하는 평가를 해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인터넷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 즉 역차별 해소는 건강한 인터넷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과도한 규제 차원을 떠나서 국내의 건강한 인터넷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법계획을 세워서 그것들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특히 내년도 정책추진에 이것을 많이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엄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두 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 같은 경우 지난번 통신 분야 이용자 서비스 업무 평가 결과도 봤습니다만 협조하지 않았습니. 국내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는데 이런 규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반발하고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체계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정경쟁은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만큼 국내 규제체계 수용, 국내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이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규제 체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율규제 부분들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라 할지라도 미국 현지에서 각종 백서를 내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이 스스로 공적책무를 다해 주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제의 집행력 확보, 실효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규제가 신설된다 할지라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규제에 의해 해외사업자는 빠져나가고 국내사업자에게는 규제가 추가되는 그러한 역차별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방, 공유 그리고 인터넷의 기술들이 전 산업, 전 사회에 확산·보급되면서 산업과 사회에 활력, 소통의 활성화 등과 같이 우리가 애초에 인터넷을 보급했던 기본정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이 한번 신설되면 이러한 것들이 다시 약화되거나 폐지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의 특성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늘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사업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조처는 조처대로 당연히 추진하고, 특히 국제공조 부분은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공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앞으로 방송통신 융합이 더 심화되고 모든 방송통신, 콘텐츠들이 다 인터넷으로 송수신되는 시대로 점점 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늘날 상당한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 심화될 텐데 인터넷상에서 업자들의 상생, 또 인터넷상에서의 업자들에 대한 규제,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큰 중요한 업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업무이고 가장 많은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와 같은 것을 좀 더 정교하게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 논의의 결과들을 방송통신 환경에 또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맞추어서 잘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협의체를 운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거기에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잘 선택해서 참여시켜서 우리가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이 아니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잘 반영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바. 홈쇼핑방송사업자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바> “홈쇼핑방송사업자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규정된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 5월에서 11월까지 한국방송학회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상품공급자, 납품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조율을 완료한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입니다. 2개의 장 및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납품업자, 거래기본계약, 방송조건합의서,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 사전제작영상물, 거래방식, 수익배분방식 등 방송법령상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는 되어 있으나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송편성의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입니다.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방송 예정일 3일 전까지 방송조건합의서를 체결하도록 노력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했을 경우 납품업자에게 서면통지 및 해당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액수수료 강요 금지입니다. 납품업자가 정액 또는 혼합배분 방식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불리하게 편성하거나 체결한 편성을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작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입니다.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 전가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납품업자가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입니다. 홈쇼핑방송사업자 스스로 사전제작영상물의 제작비용 분담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자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방송조건합의서 변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가이드라인에 구체화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관계공무원이 각각 추천하는 2인과 비영리 시청자권익보호단체, 법률전문가 등 11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4기 방통위원회는 방송통신 사업에서의 갑을관계 청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업자 간의 상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방금 보고받았고 그 보고서까지 발간했습니다만 방송계에서도 갑을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생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주제작과 방송사 간의 문제, 또 외주제작 안에서 스태프와의 상생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SO와 홈쇼핑업체 간 상생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홈쇼핑과 납품업자 간 상생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홈쇼핑은 SO나 IPTV, 스카이라이프 이런 데 대해서는 을의 관계에 있지만 그 자신이 납품을 다루는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는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생 문제가 있고,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쇼핑업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유료방송의 재원이기 때문에 홈쇼핑업체를 우리가 너무 비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을 잘 육성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도 납품업자와 공정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관계를 잘 조사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 안건은 작년 9월에 TV홈쇼핑사 금지행위 위반 시정명령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원에 시정명령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신청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 의견 조율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사업자들 대다수가 동의한 내용입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전부 동의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특별한 쟁점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없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작년에 의결한 시정조치안에 대해 법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한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있었던 직매입 상품에 사용된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제작된 사전영상물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우리 위원회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위원회 입장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합니다. 과장님, 보고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율규제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바람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들이 시청자 앞에서 상생방안에 대한 약속을 하는 서약식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질 좋은 상품 제공을 위한 상생협력이야말로 홈쇼핑방송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시청권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해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허 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항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 효과도 이야기하셨지만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사전에 예방되고 서로 상생하는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에 관한 <붙임>을 못 봤는데 이것을 누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를 했습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가이드라인에는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분담기준을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제정하고서 이를 납품업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용료 지급 여부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기준 등을 미리 홈쇼핑사업자가 마련해서 납품업자에게 공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홈쇼핑사업자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납품업자가 부담하느냐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 하인데 기본적으로 그 구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협의가 아니라 기준에 이미 반영되어서 그대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이유가 소위 방송계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좋은 시간에 방영하도록 편성해 주겠다, 이것을 제시 하면서 대신에 비용은 너희들이 대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로 간 조건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렇게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당연히 약자인 납품업자가 다 부담하는 쪽으로 가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편성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좋은 시간에 편성해 주지 않는 식의 또 갑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여쭙보는 것입니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그 부분은 뒤에 <붙임>에 있는 가이드라인 제10조제2항에 보면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 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조건합의서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예방 조항을 두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납품업자는 사실 말이 없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방송업자가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사전영상제작물 비용을 대라, 그러면 좋은 시간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잘 방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이드라인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봤는지, 물론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잘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방송제작 현장에서는 또 다른 갑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편법도 동원됩니다.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가이드라인을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가이드라인은 3년마다 재검토 의견을 둔 것이고, 중간에도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일단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잘 면밀히 우리가 관찰해 보고, 특히 납품업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것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갑질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해서 잘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3년을 주기로 이 가이드라인을 바꾸기로 했지만 이것이 조금 심화되면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일단 시행해 보고 시행 과정에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입법적인 강제가 필요하다면 방송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홈쇼핑방송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지키겠다는 서약서 같은 것을 해서 일단 마음을 다잡게 하고 중간중간 점검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수익배분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기정통부 쪽에서 수익배분 관련한 가이드라인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수익배분에 관한 내용이 우리 가이드라인에만 포함되니까, 아니면 수익배분에 한정한 혹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존재합니까? 정률이나, 정액이나, 혼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기에만 규정되어 있습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관계도 갑을관계 청산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주제작 시장에 비하면 양자 간의 갑을관계라는 것은 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장 심각한 것이 수수료 부분입니다. 일부 홈쇼핑사에서는 백화점 수수료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이것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백화점 사업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것은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홈쇼핑사업자들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다시 콘텐츠사업자에게 지급되고 그럼으로써 콘텐츠 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재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품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수수료 수익배분 방식입니다. 정률로 할 것이냐, 정액으로 할 것이냐, 혼합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홈쇼핑사업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홈쇼핑사업자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수익배분 방식을 정합니다. 이것이 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의 갑을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해 주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이 부분을 점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과기정통부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용자보호 업무입니다. 최근 유료방송 이용하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홈쇼핑의 T커머스 사업자까지 대거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많게는 15개에서 16개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10번대, 20번대 틀면 전부 홈쇼핑 나옵니다. 물론 홈쇼핑 채널을 피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채널을 돌려가면서 재핑하면서 방송을 시청하는 이용행태를 고려한다면 예전에 나왔지만 홈쇼핑사업자와 티커머스 사업자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방송채널에 편성하도록 할 것이냐, 즉 플랫폼사업자들의 편성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균형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지금은 홈쇼핑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채널들을 지상파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것도 중요한 편성전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홈쇼핑 채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채널 콘텐츠로 한다거나 연번제로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한번 과기정통부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물론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갑을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대단히 높다, 또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홈쇼핑 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원 부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상생협력 협의회에서 이런 점을 잘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상생 조처들이 조금씩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홈쇼핑업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송평가 때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감점하는 부분이 그동안은 3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규정을 49개로 항목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방송평가 제도를 바꾼 부분에는 포함 안 되어 있지만 홈쇼핑업체들은 감점항목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눈 여겨 보고 앞으로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홈쇼핑업체 상생 문제 갑을관계는 홈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차원에서 유료방송사업자 IPTV, SO,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서 너무 많이 요구해서 거기에 많이 주면 이 사람들은 납품업체에게 짜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큰 틀에서 상생협의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납품업체가 아주 영세한 경우에는 대행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MD가 다 그렇지 않는 않지만, 몇몇 MD들은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이것을 통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떼어가는 것입니다. MD와 적당히 나누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생 문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정한 일부 MD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들을 지정해서 대행업체를 통해 납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떼서 MD와 그 대행업체와 나누는 것이지요. 그만큼 납품업체가 수수료를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신고를 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조사해서 그런 것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18-73-601)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동석 지상파 방송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가> 2018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 (재)국악방송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한다. <나> 허가유효기간은 도로교통공단에 대해서는 4년으로 하고, 국악방송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과 하단의 주요경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5>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가> 구성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명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기간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총 2일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교통제주FM방송국 등 11개 방송국은 700점 이상, 국악방송FM방송국은 650점 이상 700점 이하를 획득하였습니다. 하단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재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2개의 방송사는 기존 재허가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방송국 운영

등에도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입니다. 허가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650점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을, 700점 이상일 경우에는 4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입니다. 세 번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자 권익보호 계획 수립, 보도금지 등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부과하고, 수신환경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는 권고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의견은 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7>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재허가 심사 결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하되 무선국 혼신해소 등 일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8> 검토의견입니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기술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0점 이상 평가된 2개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허가유효기간은 심사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도로교통공단에 대해서는 4년으로 하고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국악방송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방송사업자별로 <붙임 1>과 같이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한다 입니다. <9> 향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12개 지상파방송국 재허가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표철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도로교통공단 소속 교통방송국들이 특히 지역재난이 있을 때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규정 점수는 다 넘어서 재허가기간을 도로교통공단 4년과 국악방송 3년으로 나누고 조건과 부가사항을 부가하여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이번에 조건사항으로 나가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보도편성은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프로그램 편성비율 60% 이상으로 꼭 이행을 해 달라는 권고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특히 국악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일반 텔레비전 PP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국악방송과 인력, 재무 이런 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국악방송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예산은 문체부 일반회계예산으로 10억 7,000만원을 받았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13억원을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으로 내년 2개월치를 반영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악방송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쓰는 문제는 당연히 기금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사전협의를 전혀 없었고 사후에 밝혀졌습니다. 물론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에서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악방송의 라디오방송 재허가 부분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표철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대해 교통, 기상 관련 정보는 포함하되, 보도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해서 서울교통방송과 달리 유사보도 논란을 차단한 점, 그리고 로컬방송을 60% 이상 편성하도록 권고한 점은 교통방송의 특성상 지역 교통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악방송 문제 관련 해서 표철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위해 소위에 참여 했는데 나중에 예산 소소위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국악방송이 전통문화예술TV를 설립하면서 방발기금 지원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사전 협의 없이 문화부와 그리고 국회 문광위, 예결 소소위 위원들과 협의해서 예산 10억 7,000만원, 특히 방발기금 13억원을 지원받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주무부처인 방통위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문화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및 국회 상임위 간 갈등을 유발한 매우 심각한 행태입니다. 종전의 아리랑국제방송 문제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 방발기금이 지원되는 문제를 놓고도 관련 상임위 간 주무부처 간 그리고 예산 지원이나 즉 기금 지원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시 문제가 야기된 것이고 이것은 과거와도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아리랑국제방송에 대한 지원은 과거 공익자금이 지원되던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름 사정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완전히 다른 행태입니다. 따라서 사무처에서 아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일단 지난주에 국악방송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안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특히 방발기금에서 지원하는 13억원을 TV 쪽에 쓰는 것은 문체부와 저희와 기재부와 3개 부처 간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방발기금을 쓰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 13억원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왔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를 통해 기재부와 협의해서 2020년 이후에는 예산을 저희 예산을 쓰지 않는 쪽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하시느라고 표철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잘 심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악방송이 방송 채널사용사업 PP지요. 유료방송 PP로 추진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우리 전통 국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화되고 있는 국악의 상황들을 본다면 일반 TV방송을 통해 국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취지, 국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2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표가 옳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예산 확보 방안 아니겠습니까? TV방송은 라디오방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권고에 나와 있지만 국악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추진 시 지상파방송사업 즉 라디오방송과 인력, 장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지 점검할 필요, 말이 그렇지 이것이 됩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방송국 론칭이야 5억원 정도 있고 기본설비가 있으면 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해 달라거나 아니면 공익채널로 지원해 달라거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권고만 붙이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 되지만 국장님께서 이사회에 가서서 그런 조건을 붙였다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확보, 예산 운영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악방송이 소속은 문화부로 되어 있고, 또 이번 TV방송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발기금으로 쓰겠다는 생각 같은데 기재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승인해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데 신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소요되면 그 부분에 대해 타당성 검토해야 하고 예산 주무기관 의견도 다 들어야 합니다. 과장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없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마치 나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방통위원회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비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기 전 단계에서 분명히 점검할 것 다 점검하시고, 또 그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한 다음에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악방송의 TV방송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서 세 분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전혀 없었다는 점, 또 방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 느닷없이 그렇게 된 과정은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마침 담당 국장님이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조건을 붙여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13억원이 방방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으니 국회 의결사항이니까 그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겠지만 내후년부터는 반드시 3개 부처 간 협의를 해서 방발기금이 아닌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서 본예산에 집행되도록 부대조건을 잘 다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악방송이 라디오뿐만 아니고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보급된다면 우리 고유의 국악이 보편화, 또 저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TV채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 편법이 동원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악방송 쪽의 해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왜 사전협의를 없었다는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사전협의를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원래는 방발기금을 전혀 쓰지 않고 일반 회계로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국악방송 해명에 따르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어쨌든 방발기금에서 나가리라고 예상을 못 했다, 그래서 우리와는 협의하지 않고 문체부하고만 협의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부대조건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건과 권고사항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은 전국 11개 라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송 편성에서 보도는 제외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지금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조건으로 강력하게 붙어 있어서 혹시 보도가 방송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조건을 붙였고, 그다음에 권고사항에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다양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방송이나 국악방송에 시청자위원회가 현재 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있습니다. 법적 의무대상사업자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권고사항으로 붙어 있으니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방송의 경우에 로컬방송이 60% 이상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교통방송은 지역성이 가장 생명입니다. 전국 단위로, 지방도시 단위로 방송이 11곳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역성 구현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지상파정책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국회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증액할 때는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새로운 비목을 만들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항목 안에서 액수를 늘리는 것은 통상 예결위에서 그런 일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회계규정에 따라 명백히 위반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국악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대표계 제가 여쭙았는데 예산 문제를 방통위와 상의했느냐 하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충당하라고 하면 당연히 방통위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이것은 내년 13억원이 1년치 예산이 아니고 일부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해마다 앞으로는 40억원 이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국악방송 PP에 넣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구를 해서 사용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 처리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반드시 이런 형태가 유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집행하고, 그다음 2020년 운영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보시고 기재부 그리고 국악방송의 주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악 방송 TV채널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국악방송의 지상파방송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과 재무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집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하기 전에 그것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의 타당성까지 우리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예결위 소소위에서 확정되니까 아무도 모르고 해준 것 아닙니까?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본 의제와는 다르게 이것 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일단 13억원이라는 방탈기금 프로그램 제작비 2개월치인데 2개월치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 2개월치만 반영되었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국악방송 계획에 따르면 TV방송국 개국하는 것이 연말경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말 분 2개월 치만 내년에 반영한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내년에 13억원이 집행되더라도 곱하기 2개월치니까 6을 해서 1년치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론칭에 필요한 사전제작물 정도로 해서 2개월치 정도만 하면 연말에 개국은 할 수 있겠다는 것 같은데 규정을 잘 보십시오. 국회가 의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처음부터 원점에서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잘 따져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내후년부터는 절대로 방탈기금에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내년 예산도 회계규정상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를 잘 따져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

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내년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결산심사 때도 반드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주무부처로서 방발기금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악방송에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작년에 전통문화 예술 텔레비전을 IPTV로 진출한다면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청했었고 용역비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비목이 아니고 이 용역항목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올해 TV프로그램 제작 예산 4개월 분 26억원을 신청했다가 삭감돼서 13억원이 배정되긴 했었지만 기재부 입장도 당초 문체부에서 일반회계로 11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을 때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은 예산반영을 못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소소위에서 방발기금으로 13억원이 책정된 것은 결국 예결위 소소위 위원과 기재부가 이 사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의 조건이 존재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문체부가 언중위 예산이나 아리랑국제방송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일반예산 대신에 방발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콘텐츠 제작 예산을 방발기금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기재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부처는 국회 상임위에서 주무부처와 예산 지원부처 간 차이로 해서 늘 지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내년도 하반기에도 13억원이 집행된다면 그 이후에 아리랑국제방송과 언중위의 재판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면서도 방통위가 제대로 정책적 대응을 못한다면 그 무능함에 대해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문학이 됐든 예술진흥은 문화부 소관이고 그것들은 전부 다 일반회계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악이라는 것이 예술의 한 형태이고 그것을 진흥하는 것인데 방송을 통해 나간다고 해서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 아리랑방송이나 언론중재위는 분명히 보도 부분도 있고, 아리랑방송은 예술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도가 있거나 일반 오락방송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전통예술을 진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일반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발전을 통해 방송사들에게서 일부 받은 것을 다시 방송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들이 부족해서 지역지상파방송에도 제대로 지원도 못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전통예술을 진흥하는데 쓴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더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나>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입니다. 시민미디어로서의 위상 강화, 지역주민 참여 제고를 위해 「공동체라디오 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2> 추진배경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2005년도에 도입되어 지역기반 미디어로서 공동체 형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최근 신규 미디어 서비스 출현으로 이용자 감소가 우려되고 이에 재정 악화, 협소한 방송 청취 권역 등으로 방송국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추진경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방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동체라디오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첫 번째, 양질의 지역콘텐츠 제작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예산을 증액하고, 두 번째 방송구역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해 방송법 허용범위 내 출력 증강을 검토하고, 세 번째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네 번째 방송재난에 대비한 백업망 구축 등 방송신호 전송망 이중화 등입니다. <나> 공동체라디오 발전기반 조성 부분에서는 첫 번째, 국회에 발의된 공동체라디오 진흥 법안의 제정을 지원하고, 두 번째 공동체라디오의 허가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세 번째 공동체라디오 특성에 맞는 심사항목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희망사업자의 방송구역에 대한 사용가능 주파수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라디오 중장기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두 번째 방송제작 협력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MOU 체결을 추진하며, 세 번째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홍보 강화, 네 번째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이러니컬하게 기존의 지상파방송망들은 유료방송망을 통해 주로 수용되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지상파를 통해 수신되는 방송이 공동체라디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지상파를 제대로 직접수신할 수 있으면서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라디오가 활성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이 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2009년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 이후 처음으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했다는 점에서 이 안건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또한 개선방안으로 공동체라디오의 경쟁력 강화, 발전 기반 조성, 활성화 지원에 3대 추진전략 12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보고안건을 보면서 드는 아쉬운 점은 공동체라디오가 주류 미디어와 다른 공동체 기반 또 사회적 이익 추구, 비영리적인 특성을 지닌 제3영역의 방송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라디오가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되고 현재 팟캐스트 기반의 마을라디오와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학습과 실현의 주체로서 어떠한 실천적 행태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시된 활성화 방안은 기존에 제기한 사업자들의 민원사항을 리뷰하고 재정리한 정도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내년에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던 정책협의회에서 오늘 보고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때 팟캐스트 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의 환경 변화로 인해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공동체라디오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 점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력증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장·단점 검토와 더불어서 앞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NGO 매체와 어떤 차별화된 모습으로 진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공동체라디오는 십수 년 전에 舊 방송위원회 시절에 시범사업으로 원래 추진이 됐고 시범사업 형태로 일곱 군데가 허가되었고 그 이후에 진전이 없이 7개 사업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마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연히 재정 기반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1W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출력증강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력증강 문제는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한 것인지, 소위 말해 간섭현상들이 생기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니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하는 목표치를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자고 되어 있는데 5년까지 가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허가를 하면서 경영상황을 많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난번 재허가 심사 때 보면 무선종사자가 편성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디오방송인데 무선종사자에 대한 기준을 너무 완화하는 것도 맞느냐 하는 것도 있어서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동체라디오를 확대하는 데도 당연히 찬성입니다. 이것이 아주 소규모 단위지역의 공동 이익이나 공동 관심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단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부분에 일부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할 수 있느냐, 실제로는 거의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이 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사업자가 총 7개 사업자밖에 없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신규 신청자는 몇 년째 없지 않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아마도 수익구조에 대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제가 눈에 띄는 것이 대개 각 방송사마다 5명 이내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직이 높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잦은 이직이 있어서 양질의 프로그램 송출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방안을 보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디오 종사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재단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제작 장비를 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장비를 대여하면 미디어재단의 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미디어재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미디어재단 자체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교육을 시키고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하루 이틀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장기대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사정을 잘 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방송인데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절제된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품질을 높이는 부분에서 미디어재단이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세워서 미디어재단과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술 종사자는 여러 군데 돌면서 어느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맡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 점은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각 사마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미디어재단에서 기술자를 고용해서 파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은 주파수 공유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미 주파수가 다 찼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주파수를 찾아서 공유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주파수 1W에서 2W, 3W, 5W 모르겠습니다. 저는 10W까지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2018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2018-73-602)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2018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2018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 주문입니다. ‘2018년 12월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등 7개 지상파 DMB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붙임 1>과 같이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한다’입니다. 재허가 대상 방송국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등 7개 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경과로는 올해 3월 21일에 ‘2018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하고, 재허가 신청서류 접수를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운영기간으로는 올해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3일간 운영하였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의견청취 등 일자별 심사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각 평가점수입니다. KBS 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등 7개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모두 재허가 세부계획에서 제시한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평가점수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주요 평가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사업 수익성의 한계 부분입니다. 지역 사업자는 DMB 광고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매체 경쟁력 하락에 따라 유일한 수입원인 채널 임대

수익 또한 줄어들고 있는 등 DMB 사업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B 사업을 단순 유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서비스·기술 연구 개발 및 투자, DMB 전용 콘텐츠 제작 및 확보 등 DMB 매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사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지상파DMB는 트래픽 과부하 위험이 있는 통신망이 아닌 방송망을 활용하는 무료 이동방송이라는 점에서 DMB가 지닌 재난매체로서의 가치는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청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음영지역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음영지역 해소계획 수립 등 방송 수신 여건 개선을 위한 방송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DMB 사업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고화질 채널 도입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자 재난방송 매체로서 DMB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기능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방송사가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지상파DMB는 지상파TV를 이동수신할 수 있는 보조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심사항목도 지상파TV와 대부분 동일하므로 지상파TV 재허가 심사 시 지상파DMB를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를 하되, 허가증에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부관사항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KBS 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등 7개 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결과,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확산 등 모바일 방송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이동방송 정책 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을 3년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재허가 조건으로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의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재허가 조건(안)은 <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과 <붙임>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도 표철수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셨는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지상파DMB는 재난 방송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UHD 이동수신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상파DMB는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 사들이 앞으로 언제까지 기술투자를 얼마 늘려서 하겠다는 계획들을 심사계획서에는 냈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래서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연구개발 및 방송시설 투자 계획을 준수하라, 그리고 그 실적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DMB 방송을 하면서 과연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방송사 측은 음영지역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전부 다 경영의 어려움입니다. 재원 문제인데 이것이 DTV 쪽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정책으로 방송광고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결합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이 DMB 쪽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심사위원회 의견을 보면 지역 지상파DMB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어서 안건을 대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수고해 주신 표철수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7개 지역 지상파DMB에 부과된 허가조건을 보면 지상파DMB가 방송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 그리고 방송서비스 품질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매체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역DMB의 현실을 인정한 심사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가기간을 3년으로 부여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역 지상파DMB의 사업수익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영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음영지역의 해소 계획 수립 등 방송수신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방송사 노력을 촉구하는 심사의견에 대해 지역 방송사들이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DMB는 신규 서비스라기 보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이동수신매체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지역방송사의 공적 책무의 일환이라고 여겨집니다. 심사위원회 의견들을 잘 새겨듣고 KBS와 지역MBC 경영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지상파DMB가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골칫덩어리입니다. 수익을 별로 나지 않는데 점점 UHD나 새로운 기술이 자꾸 생겨나서 여기에 마냥 투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통 사항으로 재허가 조건에 넣었지만 음영지역 현황을 파악해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놓아라, 결국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강원지역은 음영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했는데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지금 부위원장께서는 공적책무를 말씀 하셔서 반드시 해야겠지만 만만치 않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허가 기간 문제인데 이것을 지상파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 함께 심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심사위원들의 일부 견해가

있었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검토요청이 있었고, 그런데 DTV와 지역하고 중앙과 또 허가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상파 DMB와 시간을 맞추려면 당장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 DTV 허가기간을 살펴 보고 추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는 그것을 빼고 3년만 먼저 주는 것이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같이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당분간 UHD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DMB가 효용가치가 있는데, 함께 심사를 받게 되면 지상파 DTV 심사에 묻혀서 소홀히 다루어지게 될 우려도 있어서 3년이 적정해 보입니다. 특히 고화질 채널 도입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연간 매출이 7,000억원 정도 되는데….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생각당 7,000만원 정도 되고, 고화질 DMB 구축비용은 사당 평균 5억 5,0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5억 5,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을 너무나 원칙만 강조해서 사업자에게 곤란함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정책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엇박자가 나고 계속 방송사업자를 위반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DMB가 사양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정책에 담아내자는 제의를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통신을 보면 과거 2G, 3G 다 없애고 주파수 회수했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그런 정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표철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성이 있는데 그 유효성이 계속 나날이 떨어져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사업을 원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억지로 계속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적절한 시점에 주파수를 회수하고 다른 방송에 활용하는 것을 연구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표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효성이 있고, 특히 재난 방송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허가 3년으로 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 등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공지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의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4분 정회 】

【 14시 32분 속개 】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보고안건 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사항입니다. '1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162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해서 방송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후 노웅래 의원, 추혜선 의원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7년 12월 15일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방송관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시민·사회 분야 18개 단체 추천인사로 해서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였고, 2개 분과를 운영하였습니다. 1분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 2분과는 편성 제작 자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개 분과는 각각 7회 회의를 했고, 전체회의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방송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대국민 의견수렴, 그다음에 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지난 8월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상임위원회회의에 보고를 했고 세 차례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등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공영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방송정책의 최우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박홍근 의원 법안

등 기존 발의법안을 존중하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고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과제별 개선 방안입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칙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이사회 구성 방식과 절차의 개선임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선임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직접 선임하는 방식보다는 여·야 및 행정부·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구현하고 국회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정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반영된 부분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중립 또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가칭)국민추천 이사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일정 수 이상을,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상임위원이 전원 합의로 선임하며 선임 절차 및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현행은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시민사회 등 일정요건이 되는 단체로부터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 인사를 추천받거나 현행과 같이 공모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사의 정원은 현행 KBS가 11인, 또 방문진과 EBS가 9명이나 이사 수는 13명으로 증원하되, EBS의 경우 교육 전문방송임을 고려하여 현행 9명의 유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사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사 의사결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이사 임기교차제와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를 위한 연임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사회 결격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해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사의 선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감사도 동일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속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비공개 시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합니다. 다음 사장 선임과 관련된 개선방안입니다. 국민추천이사 등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개선된다면 박홍근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여부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장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이사회가 국민의견을 직접 듣도록 의무화하고, 그 의견수렴 절차와 방식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반영토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할지와 관련된 부분 역시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도입 시에는 일정기간이 경과 후 과반수제로 전환하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와 관련된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개선방안입니다. 방송 제작·편성 과정에서 종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상파, 종편·보도전문 PP에 사업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그 편성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편성규약의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시청자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사업자·종사자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는 방송사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편성위원회의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제도에 대한 심의는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성위원회가 사업자와 종사자 동수로 구성되어 갈등 사안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가 있음에 따라 분쟁중재기구를 설치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편성위원회가 사업자와 종사자 동수로 추천하거나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칙과 관련된 사항은 개정법에 따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되, 이사·사장 선임(추천)에 관한 규정은 차기 이사·사장 선임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고 나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는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붙임>으로는 전체 원본 의견서와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제안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방송이 정치적 영향을 덜 받도록 정권에 상관없이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위원, 국민들, 정치권의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된 것들을 보면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정치권의 영향이 없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전체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먼저 그간의 논의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도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사실상 사회적 논의기구로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또한 지난 8월 4기 방통위 출범 이후에 바로 구성하였습니다. 경과사항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2개월 동안 운영해 왔고, 오늘 여기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관계법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은 이러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했다시피 대원칙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그리고 8월 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에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대원칙 하에 지금까지 방송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2016년 7월에 당시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박홍근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즉, 야당일 때와 여당이 된 다음에 입장이 달라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출한 의견에는 당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을 대부분 살려서 이번에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위원들 또한 야당에서 여당으로 뛴다고 해서 방송법 개정과 대한 입장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 하에 박홍근 의원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영방송의 이사과 사장 선임 시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추천하는, 즉 공영방송 운영에 있어서 국민 주권주의가 관철되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께서 크게 공감하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천, 임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직접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임명할 경우 정치적 후견주의와 이에 따른 정파성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으로 최소 3분의 1 이상의 이사들을 국민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로 참여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제정과 관련하여 현행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는 대원칙만 선언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편성위원회 구성, 그리고 편성규약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 이것을 좀 더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외국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상파방송사 같은 경우 공·민영을 막론하고 노사가 현재 협의에 의해 관행적으로 편성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고 편성규약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지난번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내년 2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 중 하나로 방송법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 방통위가 법안 형태보다는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훨씬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오늘 이러한 의견들을 보고드립니다. ‘공영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이러한 대원칙들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고, 또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건의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안들이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존중되고 그러한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무처에서 방송미래발전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안들을 만드는데 큰 고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도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이끄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것이 성안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사이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이끌어주신 고삼석 위원님 노고가 크셨습니다. 여기 내용에 담긴 것 중 가운데 특히 지금 제도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담긴 것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인데 일괄 선임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교체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임기교차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연임을 1회로 제한하자는 것, 그리고 결격사유를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 직전에 이사를 했던 분들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는 일이 있었고, 또 현직에 있는 분들이 지원해서 이사가 되는 사례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 기능 가운데 ‘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이것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인사권과 관련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민영방송에서는 노사 합의로 사장 임명동의제 같은 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이고, 보도·제작·편성 핵심 간부들이고 무척 중요한데 임명 때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편성위원회 기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달 3일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그날 회의에서 법안소위 위원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가 오늘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위원회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상임위원 간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오늘 의견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문기구를 운영하신 고삼석 위원님, 또 사무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의 확보는 공영방송 존립의 기본철학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사의 경영진 구성에 정치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공영방송 개혁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상임위원들 간 충분히 고민하면서 내놓은 결과가 오늘의 의견서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정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하거나 선임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운영되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사를 발굴해서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9년 사회적 합의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안을 국회 문방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행 방송법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방식이 마련된 것입니다. 방송개혁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정신을 방통위가 스스로 거둬들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방통위 역시 정치적 후견주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과거의 운영사례를 반추해서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중립지대 역할을 할 이사 선임을 위해 (가칭)국민추천이사 도입을 제안한 것입니다. 특히 (가칭)국민추천이사 선임 때 방통위원이 전원합의하도록 한 것은 극단적인 정파성을 지닌 사람을 걸러내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인물들이 이사에 선임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전원 합의를 하기 어렵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숙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방식도 중립지대에 이사가 있는 이사회에서 직접 정하도록 해서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서 확립된 국민 참여 방식은 되돌리기 어려운 역사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장 선임 방식은 이사들의 자율적인 권한으로 남겨 두는 것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국회의 논의와 우리 방통위원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이사 추천 내지 선임 방식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 문제를 방통위원들의 권한 확보 문제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는 공영방송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여야 추천인사가 포함된 방통위를 통해 방통위는 중립적인 이사회를 통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영방송 개혁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견서 원안에 동의하며,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서 위원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의견서의 핵심이고 또 백미가 바로 중립지대 국민추천 이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정치적 예측을 우리가 방지하고 또 지금처럼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여야 간 정쟁의 대리전처럼 치러지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립지대의 이사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번 우리 의견서 낸 안에 백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소수의견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성위원회 이야기인데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동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방송사 업무가 상당 부분 프로그램의 편성 여부를 두고 상당한 갈등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을 내느냐, 마느냐, 편성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사업자 회사 측과 종사자, 노조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침해한 대립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방송을 못 낼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은 종사자나 회사가 크게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것은 그야말로 노조 고유의 업무 가지고 복지 문제 등을 가지고 대립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념으로 많이 대립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이데올로기 쪽 제작 문제를 가지고 침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소위 노사 동수로 구성할 경우에는 상당한 그야말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재기구 설치라고 하는 따로 조항을 두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국과도 우리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동수로 구성하는데는 저는 반대라고 해서 3기 때도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이것은 방송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소수 의견으로 내게끔 한 것입니다. 또 앞서 표철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 간부를 임명할 때 반드시 종사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인사권이 중대한 침해가 생깁니다. 역시 종사자가 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인사 대상인데 바로 인사 대상인 사람이 인사에 관여해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편성위원회가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고, 경영권까지도 침해하고 편성권까지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됩니다. 적어도 공영방송은 이사회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편성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해서 아주 만능이 되어 버립니다. 제1의 권력기구, 최고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조에서 요구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의견서에 불과하고 우리가 정부 입법 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소수 의견을 다는 것으로 양해했습니다만 혹시 보도 자료 나갈 때 언론에 알릴 때는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소수 의견을 달지 않고 마치 우리 위원회가 위원 간 합의가 되어서 동의가 됐다고 나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체크해 주십시오. 분명히 소수 의견 있습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소수 의견이 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4차례에 걸쳐 상임위원님께서 워크숍을 하셔서 논의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안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다 모아서 정리해 주셨고, 다만 편성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동수로 구성하는 문제와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종사자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인사권의 침해와 관련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의견에서 소수 의견임을 반드시 밝혀서 의견을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말씀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 경과를 설명드리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규약을 사업자 구성원 동수로 이루어진 편성위원회에서 제정·시행하도록 한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현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16년 7월에 발의한 박홍근 의원 안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그대로 수용하자는 입장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운영됐던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즉, 편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규약을 제정·시행하자는 것에 대해 당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것이 상임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당시에 입장을 번복해서 최종 법안에는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들 논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건의서에 포함시켰고, 또 방통 위원들 워크숍하는 과정에서 다수 위원들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 안건은 <보고안건 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규제체계의 차별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한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7년 7월 19일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제도개선’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동년 9월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12월 까지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제도개선’ 관련 정책연구를 시행하면서 2018년 7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6회 개최하여 2018년 9월 14일 협의체가 제도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도개선(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이해관계자, 즉 종편PP, 플랫폼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구성 현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의무송출제도 현황, 해외사례, 법률·경제적 검토, 시청자 보호 측면의 검토 등을 주제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연혁 및 해외사례입니다.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조항은 방송법 제7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PP 채널 의무송출의 연혁입니다.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는 200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당시 승인PP 채널(종편·보도·홈쇼핑)에 대하여 의무송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규정 신설 당시 승인받은 종편PP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2001년 홈쇼핑PP 채널의 의무송출이 폐지되고 2007년 보도전문PP 채널의 의무송출을 종전 '모든 채널'에서 '2개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9년 종편PP에 대한 소유제한이 완화되면서 2011년 4개 종편PP가 승인 받은 이후에도, 2000년에 도입된 종편PP 의무송출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관련 해외사례입니다. 종편PP 채널을 대상으로 의무송출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로는 독일이 있으며, 각 주에 적용하는 방송 관련 규정인 방송국가협약에서 시청률이 높은 2개 종편 채널을 대상으로 의무송출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대 민영방송 채널인 RTL과 Sat.1에 지역 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부과하고, 2개 채널의 의무송출을 통해 지역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채널을 대상으로 의무송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PP채널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제도개선(안)입니다. <제1안>은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유지안입니다. 종편PP 채널은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편성을 통해 다양성에 기여하며, 보도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방송법 취지에 부합하고, 경제적으로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업자가 있는 등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상파보다 프로그램 사용료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보다 협상력에서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송출 유지가 필요하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안>은 의무종편 종편PP 채널 수를 1~2개 이상으로 축소하는 안입니다. 모든 종편PP 채널 의무송출은 플랫폼에게 과도한 규제이며, 종교·공익 등 타 의무송출과의 형평성을 위해 의무송출 채널수를 1~2개 이상으로 축소하자는 안으로 일부 종편은 높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의무송출 축소 시 현재 종편PP에게 기울어진 종편PP와 플랫폼 간 협상력 불균형도 완화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제3안>은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폐지안입니다. 방송법 제70조제1항의 "특정 방송분야 채널 편성방지"는 채널 내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보다는 플랫폼사업자의 채널구성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무송출은 상업적 논리로 채널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PP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종편PP 채널은 이미 시청률,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했으므로 의무송출을 폐지하여 재전송 대가 협상 시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의체의 논의 결과, 위원들 중 종편PP 의무송출 폐지안에 6인, 현행 의무송출 유지안에 4인, 의무송출 축소안에 1인이 찬성하였습니다. 관련 방송사업자의 의견입니다. 종편PP 중에서 조선방송, 채널에이, 매일방송은 의무송출 폐지안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제이티비씨는 신생사업자 지원이라는 제정 당시의 취지가 달성되어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은 의무송출을 폐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송출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당장 시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무송출 폐지 이후 프로그램사용료 관련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송유지재개명령 대상에 종편PP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보도PP에 대한 의무송출 폐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의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PP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협의체 다수안이 여타 안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다수안을 존중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규정 폐지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보고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송출 규정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방송진흥정책국장이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종편PP 출범 당시에 방통위에 의해서 주어졌던 종편PP 특혜정책을 바로 잡는 안건으로 방송 생태계 정상화 작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구조 체제에 진입하는 신생 방송사를 위해서 비대칭 규제를 해 오던 것을 이제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종편PP에 대한 의무재전송 조항이 2000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종편PP의 의무재전송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펴보면 200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때 종편PP에게 의무전송 지위를 부여한 것은 영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시의 외주 전문채널 지원을 통해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기업과 대형신문에 방송시장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종편PP의 의무전송 조항 제정의 당초 취지는 사라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고한 대로 의무송출의 근거가 된 방송법 제70조제1항의 다양성의 의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가장 쟁점이 될 것입니다. 방송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수평적 다양성은 다양한 장르에 채널이 많을수록 그리고 수직적 다양성은 한 채널 안에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다양하다는 이론입니다. 학자들 가운데 호프만(Hoffmann)과 림(Riem)은 포맷과 이슈의 다양성, 콘텐츠 다양성, 등장인물의 다양성, 지리적 커버리지의 다양성 등을 언급했고, 맥퀘일(McQuail)은 공급의 다양성, 또 채널의 다양성, 콘텐츠 다양성 외에 수신자 다양성까지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다양성 정책은 크게 소유 규제와 채널 구성 규제, 프로그램 편성 규제, 공정경쟁 규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송법 제70조제1항의 다양성 의미는 보고한 바와 같이 상업적 논리로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PP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협의체의 다수안인 <제3안>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종편PP는 프로그램 제작 역량, 광고 수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제 의무송출의 보호규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별화된 고품격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새로운 시청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방송콘텐츠의 품질제고와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종편PP의 송출 중단 우려는 현실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다만,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싸고 플랫폼 사업자와 종편PP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송분쟁의 조정 차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년 이상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사무처의 노고를 격려하며, 보고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끝으로 보도전문채널에 의무송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업무 개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무처 안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쪽 논의 해 왔고, 또 상당한 협의를 거쳐 표결 비슷하게 해서 다수안이 폐지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종편 방송이 그동안 시장에서 잘 안착을 했고, 또 영향력이나 규모를 볼 때 언제까지 특혜 속에 안주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제기와 관련, 이제는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또 시청률을 볼 때도 주요 의무전송채널 중에서 시청률 5위 안에 종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의무전송채널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후순위에 채널이 배정되는 일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편들 주장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종편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2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시행령에도 의무전송채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걷어내려면 상당한 부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리스크를 안고 누가 종편을 신청해서 시작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경청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특혜를 거둬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거둬낼 경우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따르고 또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플랫폼사업자 간, 또 종편채널 간 협상이 상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후순위로 돌리지 않는 대신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받지 말라거나 이런 식의 협상이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을 집행할 때는 참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 중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차별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라면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혜는 왜 거두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파의 주파수 사용료도 지금까지 면제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내놓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부위원장도 언급을 하셨지만 종편뿐만 아니라 보도PP 의무전송채널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특혜는 놔둘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채널 배정에 관해서는 소관이 과기정통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충분히 사업자 의견도 참작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볼 때 지상파에는 중간광고를 허용까지 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있는 것 같이 비치는데 종편에는 전부 하나 하나 특혜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자칫 우리 정책목표가 종편을 겨냥해서 종편 때리기로 비치된다면 우리의 정책의도가 순수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한꺼번에 종편 의무전송채널 제도를 폐지한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어떻게 잘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과기정통부가 잘 협의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취지와 우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무재전송은 지상파 같은 경우 KBS와 EBS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KBS1과 EBS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사실은 MBC나 SBS는 의무재전송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종편이 의무재전송 문제를 다루면서 데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한 안 가운데 종편 1, 2개만 의무재전송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별도로 종편사들 간 갈등 유발요소도 있고, 종편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형식은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책목표가. 그렇지만 지상파의 경우 중간광고 허용에 관한 입법예고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편은 방발기금 징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의무재전송을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면 자칫 지상파는 이른바 돌봐 주고 종편은 옥죄는 듯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저희들 정책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는 현실적으로는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편들을 의무재전송에서 빼게 되면 채널 편성권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채널번호 배정 문제, 그리고 콘텐츠 사용료 등에서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가, 그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플랫폼사업자들이 의견을 낸 것 중에 방송유지재개명령 대상에 종편PP를

포함시켜 달라는 것도 이미 그와 같은 갈등을 내다보고 의견을 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것까지 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의 나항이 종편채널에 대한 의무재전송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항은 보도전문 방송에 대한 의무재전송 규정인데 이번에 종편을 의무재전송 대상에서 배제하면 이것은 당연히 시행령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항은 삭제하고 다항을 둔다는 것은 형식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반드시 보도전문 방송에 대한 의무재전송 문제를 논의해서 이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전문방송에 대해서는 따지면 특혜가 더 많습니다. 광고영업도 보도기능을 24시간 하고 있는 방송사가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 사이 방통위가 정책을 원칙과 합리성에 입각해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전문 방송에 대한 의무재전송 문제를 내년에 다룸과 함께 광고제도 개선방안에서 보도전문 방송들에 대한 미디어랩 제도도 전반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특정사업자가 이익을 받게 되거나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종편PP 의무송출제도 개선 같은 경우 그것을 전제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방통위원을 하면서도 어떤 사업자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 아니다, 그래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방송시장에서의 차별 규제 해소, 그리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편PP의 의무송출제도 유지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방송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떤 위원님들이든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입견, 정해진 결론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이번 종편PP 연구반처럼 우리가 한번 다루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도PP 머스트캐리(Must-carry), 저의 입장은 약간 다르지만 표철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발제를 하셨고, 그렇다면 종편PP 의무송출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2015년 수립된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입니다. 2018년 2월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관련 방통위 사무처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였고, 2018년 12월 연구반의 제도개선(안)과 관련하여 방통위 사무처의 의견을 재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이후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사항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되,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 관련입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6개 심사사항은 첫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둘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셋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넷째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다섯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여섯째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의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관련입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승인 유효기간은 7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시 3년을 부여토록 하였고, 이행점검주기는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6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6개월 단위 이행점검이 성격상 불가능한 조건은 제외 하였습니다. 조건 부가와 관련해서는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제출 계획서 포함 사업계획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만 부가 가능하며,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 외에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의 부가도 가능합니다. 또한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관련사항입니다. 다음 기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매체별 심사항목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익성 항목의 중복 해소,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 항목의 분리, 투자 항목의 중복 해소, 경영 관련 심사 시 '경영전략'에 대한 심사 강화, 외주상생 관련 항목의 명시,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신설,

중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의 신설 등이 개선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전체의 분량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와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관련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종료 후에 기본계획(안)을 방통위에서 의결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조금 더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의견 주시지요.

○ 허 옥 부위원장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안)은 허가나 승인 심사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은 미리 공표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심사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획안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의 제시 그리고 모호한 심사기준의 명확화와 더불어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사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이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전략 및 관리항목을 추가한 것은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 경영진도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방송 콘텐츠와 회사 생존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수급과 프로그램 투자실적,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관련된 심사항목을 신설한 것도 양질의 방송콘텐츠 투자에 대한 방통위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 평가합니다. 그동안 심사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온 허가유효기간과 이행점검주기를 명문화한 것도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 계획이 향후 3년간 방통위 재허가나 재승인을 통해 방통위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만큼 사업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도 개선안 마련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책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시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특히 중점 심사사항 같은 경우 평가점수 50%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조건부로 재허가하거나 재승인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강화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재허가·재승인 사업자 허가기간도 명문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650점이라는 일종의 경계선 이상에서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이행점검주기도 2년 이렇게 넓혀 두고 미만 사업자는 1년 이행점검 계획을 기간을 달리 했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6개월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650점 미만이 나오는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했고, 650점 이상이 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권고사항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데 보면 조건이나 권고사항이나 거의 비슷하게 다 이행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건부로 재허가·재

승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600점 아래 되는 사업자는 무조건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아래쪽에도 그렇게 구간, 단락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할 수 있다면 방통위의 권한이 너무 과대하게 커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치로 다시 점수 선을 정해서 이 안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15시 32분 】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 (2018-73-600) (비공개)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위원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님들, 비공개 안건이라 지금은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언론 본연의 역할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해년(己亥年) 신년 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59분 폐회 】